CNG 저상버스 도입시 재정지원

☐ 재정지원 근거

○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(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)

○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(재정지원)

○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7조(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)

☐ 재정지원 방법

○ 지 원 액 : 국비5,000만원, 시비5,000만원(대당)

※ CNG차량 구입시 환경보전과에서 22,500천원 별도 지원

○ 보 조 율 : 저상버스(1.8억원)와 일반천연버스(0.8억원)의 차액(1억원)에 대해 국비와 시비 비율 50:50 matching fund로 보조

○ 지원기준 : 시내버스의 10%수준에서 도입을 지원

☐ 재정지원 현황

(단위 : 대, 백만원)

구분	도 입 실 적			재 정 지 원			비 고
	계획	도입	비율	계	국비	시비	
계	24	24	100%	2,400	1,200	1,200	
2004년	4	4	100%	400	200	200	원진운수 1대(6번) 시영운수 2대(15번) 영풍운수 1대(77번)
2005년	20	20	100%	2,000	1,000	1,000	시영운수 17대(15,28번) 삼환교통 3대(23번)